

학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(3-7-10)

최종개정일 : 2015.11.2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고 한다) 복지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복지시설“이란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본 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나 임대 또는 위탁으로 운영되는 모든 복지시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제4조(운영방향) ① 복지시설의 운영은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생활과 활동에 도움이 되고, 구성원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다.

② 복지시설의 혜택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한다.

③ 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 및 교직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.

제5조(개방시간) 복지시설의 개방시간은 각 시설별로 정하여 공고한다. 단, 공휴일에는 휴관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목적에 따라 개방 할 수 있다.

제6조(사용 및 관리) ① 본교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한하여 복지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인도 사용 할 수 있다.

② 복지시설은 운영주체에 따라 자산운영팀, 총무팀이 시설별로 관리한다.(개정 2018.07.16).

제7조(임대업종의 선정) 복지시설의 임대업종은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
제8조(임대차 계약방법) 복지시설의 임대차 계약방법은 입찰, 수의계약 및 계약연장 등이 있다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26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.07.16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정범위) 직제규정 제25조(타 규정 적용) 및 전략기획18-0656(2018.07.16.) ‘직제 변경에 따른 규정 내 직제명칭 일괄 개정 계획(안) 보고’에 따른 개정범위는 다음과 같다.

제6조제2항 중 “복지사업팀”을 “자산운영팀”으로 한다.